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9. 2 선고 2014가단76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5. 8. 19.

판결 선고 2015. 9. 2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1 충주시 D 대 193㎡ 지상 별지 참고도 표시 '1, 2, 3, 4, 5, 6, 1'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3㎡ 지상에 있는 주택, 장독대, 창고, 화장실, 담장, 수목을 각 철거 또는 수거하고, 2 위 선내 '가' 부분 13㎡ 지하에 매설된 오배수관을 철거하고, 위 선내 '가' 부분 13㎡를 인도하라.

나. 피고 C은 위 선내 '가' 부분 13㎡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사실인정

가. 원고는 2011. 12. 29. 충주시 D 대 19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피고 B는 1981. 4.2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주시 E 대 285㎡ 및 그 지상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'1, 2, 3, 4, 5, 6, 1'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3㎡(이하 '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'이라고 한다) 지상에 피고 B 소유의 주택, 장독대, 창고, 화장실, 담장, 수목이, 그 지하에는 오배수관이 위치해 있다.

다. 피고 C은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 지상 주택을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충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하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

(1) 주장 요지

피고 B는 20년간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·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

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## (2)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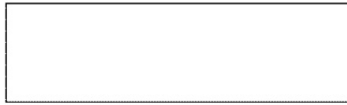
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29740 판결 등 참조).

피고 B가 1981. 4. 2.부터 20년간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점유하였으나, 아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토지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따라서 피고 B는 위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,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형걸



## 지적현황측량 성과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토지 소재 | 충주시 <input type="text"/> 외 0 필 |                      | 측 적   | 1<br>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측 량 자 | 2015년 6월 12일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text"/> | 측량성과도 | 2015년 6월 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지적기사 <input type="text"/>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작 성 자 | 지적기사 <input type="text"/> (인 <input type="text"/> ) |

현 황 표 시

| 범 례 | 명 칭  |
|-----|------|
|     | 현황선  |
|     | 아래빈칸 |
|     |      |
|     |      |

면 적 표 시

| 지번 부호  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<input type="text"/> ㄱ | 180   |
| <input type="text"/> ㄴ | 13    |
| <input type="text"/> ㄷ | 193   |
| 아래빈칸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(특수)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2015년 6월 12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서장인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 고 |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


사건 2014가단766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

since 1938

27년차 국도시청

## 참 고 도

충주시

축척 : 임의축척

